

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05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29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제안이유

- 법령에서 삭제된 행정규제 폐지

주요골자

- 평창군 건축조례 제46조(온돌의 시공)를 삭제

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별 첨
- 마. 신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새 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
평 창 군

우 232-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/ 전화 (0374)330-2472 / 전송 (0374) 33 - 6356
처리 부서 : 도시과 건축계 (본층 3층) 과장 : 석명준 담당 최근익 실무 :


문서번호 : 도경58500 - 42

시행일자 : 2001. 1. 24

경유

받음 받는곳 참조

참조

보존기간		군 수	
공개여부			
부군수	권 권		
과 장	석명준		
기안자	박		협조
심사자		심사일	

제목 평창군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안 입법예고

건축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 사항을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
소 코저 불입과 같이 평창군건축조례를 개정코저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읍면 게시판에
예고 하여 주시고 예고기간 종료 즉시 제출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.

1. 조례명 :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
2. 예고장소 : 읍면·게시판
3. 예고일자 : 공고일로부터 20일

붙임 : 1. 입법예고문 1 부

2.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부 끝

평 창 군 수

수신처 : 도 1~8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46조(온돌의 시공) ①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 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에 게 등록한 자(이하“온돌시공자”라 한다)가 하여야 한다. 다만,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</p> <p>1.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</p> <p>2.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 온돌시공 교육을 이수한자(온돌의 바닥면 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 한다)</p> <p>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 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 설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 공 하여야 한다.</p> <p>③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 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성명, 상호, 등록번호 및 시공내역, 하자보수기 간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.</p> <p>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에 의한 온돌 시공을 할수 없다</p> <p>1.당해 온돌 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.</p> <p>2.온돌시공상 작은 하자를 야기 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 한 자</p> <p>3.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 공 기술교육에 이수후 2년 이내 동항 제1 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</p>	<p>제46조 <삭제></p>

종	기
<p>제 54 조 [지해위험구역]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일·고조(高潮)·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<u>지해위험구역</u>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해위험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지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</u></p> <p>④ 신설</p>	<p>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(99. 2. 8 개정)</p> <p>제 54 조 [지해위험구역] ① 허가권자는 해일·고조(高潮)·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<u>지해위험구역</u>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<u>이 경우 지해위험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 내지 제3종 지해위험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</u>(99. 2. 8 개정)</p> <p>② <u>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해위험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</u>(99. 2. 8 개정)</p> <p>③ <u>지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u>(99. 2. 8 개정)</p> <p>④ <u>지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 47조·제48조·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u>(99. 2. 8 본항신설)</p>

제 7장 건축설비

제 7장 건축설비

제 55 조 [건축설비기준 등]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55 조 [건축설비기준 등]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56 조 [은들의 구조 등]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은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삭제(96. 12. 30)

제 56 조 삭제(99. 2. 8)

제 57 조 [승강기]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 57 조 [승강기]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(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)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.(99. 2. 8 개정)

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높이 4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99. 2. 8 개정)